

종 법(宗法)

연수 안거 건당법

제12조 1. 본종 승려는 개별 수련을 하여야 하며 종단의 합동수련 또는 정기수련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2. 승려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수교육을 기피할 때에는 각종 고시 및 법계전형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13조 1. 승려는 본인의 원에 따라 선원 및 염불원에서 수선안거로 성만할 수 있다.

2. 안거는 동안거 하안거 2기로 하고 법랍은 하안거 동안거 2기를 1년으로 한다.

3. 안거성만자는 1개월내에 서류를 갖추어 총무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 1. 승려는 법사를 정하여 법맥을 전수하여야 하며 전수는 건당 고례에 의한다.

2. 건당은 법계품수자 아니면 할 수 없다.

3. 전항을 위반하고 건당한 자는 법호를 승적에 등재하지 않는다.

4. 승려가 건당하고자 할 때에는 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